

1. 개정이유

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근거법인 「화학물질관리법」 개정 시행에 따라 연계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도급신고의무의 근거인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인용조문 구체화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1조제1항”을 “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1조제1항 전단”으로, “도급신고서”를 “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신고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도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급계약서를 해당 시설의 인·허가(등록·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도급신고서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	제4조(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출해야 -----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31조제1항 전단----- ---- 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 신고서----- ----- ----- -----.